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0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양문석 · 최혁진 · 김문수
허성무 · 박수현 · 서미화
양부남 · 조계원 · 진선미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금융사기나 가짜뉴스와 같은 위험에 노인들이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체계적인 교육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노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이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소통 능력 향상
4. 디지털 금융사기, 허위정보 등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노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내용·방법,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5(노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이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u> <u>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u> <u>2.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u> <u>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소통 능력 향상</u> <u>4. 디지털 금융사기, 허위정보 등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노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u>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
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내용
· 방법,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